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997. 10. 1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10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4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7. 10.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 은 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 개정골자

아래 재산을 아현1동, 공덕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임.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시기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1		아현1동	330.00	600,000	상반기	미 정	
2		공덕2동	330.00	600,000	상반기	미 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지방재정법제77조및 동법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취득하고자 하는 아현1동, 공덕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는 서울시의 시민복지종합5개년 계획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이 없는동에 한해서 부지매입비및 건축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는바, 우리구는 아현1동과 공덕2동이 해당되어 98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취득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시민복지종합5개년 계획에 의하여 우리구에 지원될 예산규모는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씩 150평을 기준으로 70%, 부지매입비가 평당 600만원씩 100평을 기준하여 70%까지 지원될 계획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98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한수균 위원) : 금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복지시설이 많이 요구되는 성산2동 복지시설 건립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 답변요지(이은규 재무과장) : 주관과 (가정복지과) 와 협의할 사항으로 본 과장이 전용 여부를 답변할 사항이 아님.
- 질의요지(정만적 위원) :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 답변요지(이은규 재무과장) : 본 안건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98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리계획변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1997년 10월 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계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위함.

2. 주요골자

아래 재산을 아현1동, 공덕2동 어린이집 건립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임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 시기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				
1		아현1동	330.00	600,000	상반기	미정	
2		공덕2동	330.00	600,000	상반기	미정	

3. 근 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제35조제1항제6호
- 지방계정법(1995. 1. 5 법률 제4,868호)제77조제1항
- 지방계정법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93)제84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1997.5.17 조례 제363호) 제36호, 제37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4.9.15 규칙 제186호)제29조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1 부.

구유재산관리계획

연도관리계획총괄표(6-1)

회계명:일반회계

(단위:m',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량	금액	건 수	수량	금액	건 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660.00	1,200,000				2	660.00	1,200,000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2	660.00	1,200,000				2	660.00	1,200,000	
		건물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토지											
	건물											
	기타											

연도취득대상재산목록(6-2)

회계명:일반회계

(단위:m',천 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아현1동	330. ⁰⁰	600,000	상반기	어린이집 건립	미정	2개감정평가기 관 평균치 금 액을 기준으로 협의취득
2		공덕2동	330. ⁰⁰	600,000	상반기	어린이집 건립	미정	